

경제 및 고용 동향

◆ 2011년 5월 광공업·서비스업 모두 전년동월대비 생산 증가

○ 2011년 5월 광공업 생산은 영상음향통신, 비금속광물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기계장비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8.3% 증가함.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 도매·소매, 보건·사회복지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함.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20.3%), 기계장비(13.3%), 자동차(10.6%) 등에서는 증가한 반면 영상음향통신(-18.0%), 비금속광물(-4.9%), 인쇄 및 기록매체(-15.2%) 등의 부문에서는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9.3%), 도매·소매(6.4%), 보건·사회복지(5.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4.1%), 운수(3.0%), 숙박·음식점(2.9%) 등의 부문에서는 증가한 반면 부동산·임대(-12.7%), 전문·과학·기술(-1.2%), 교육(-0.8%), 예술·스포츠·여가(-0.7%) 등의 부문에서는 감소함.

○ 2011년 5월 소비와 투자 모두 전년동월대비 각각 6.2%, 10.5% 증가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컴퓨터·통신기기, 승용차, 가전제품 등의 판매 증가로 내구재(19.9%)가 증가하였고,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 등의 판매증가로 준내구재(5.4%)가 증가함.

－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기계 등 기계류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0.5% 증가함.

－ 건설기성(경상)은 공중에서는 주택(공동주택) 및 플랜트, 발주자에서는 공공, 민간 실적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6.3% 감소하였으며, 건설수주(경상)는 공공부문에서 관공서, 기타건축 및 도로·교량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서의 공동주택, 기계설치 및 공장·창고 등의 발주가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2.5% 감소함.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2로 전월보다 0.3p 상승하였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1.3%로 전월보다 0.2%p 상승함.

◆ 2011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4.4% 상승(생활물가지수 4.3% 상승)

○ 2011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6(2005=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4.4% 상승하여 2011년 1월 4.1% 상승 이후 6개월 연속 4%대 상승을 기록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통신부문만 1.1% 하락하였고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하였으며, 특히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 주거 및 수도·광열, 가구집기·가사용품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큼.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08					2009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 p	5월	1/4	5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0.6	8.9	5.6	11.3	3.0	-15.7	-6.1	4.3	16.2	-0.8	25.8	19.5	10.9	11.7	16.2	20.6	10.6	8.3(1.7)
	제조업 생산	10.7	9.3	5.5	-12.1	3.0	-16.5	-6.6	4.4	16.8	-0.9	26.8	20.2	11.2	11.9	16.7	21.2	10.9	8.5(1.0)
	출하	8.9	6.6	5.3	-10.1	2.4	-14.9	-5.8	2.1	12.8	-1.7	21.8	17.2	9.9	11.9	14.4	17.2	11.9	8.4(1.0)
	내수	5.3	1.7	1.7	-11.0	-0.7	-15.7	-5.9	3.4	12.3	-1.8	21.2	15.4	6.6	8.3	11.5	14.1	7.2	5.8(1.9)
	수출	14.3	14.3	10.3	-8.8	7.1	-13.8	-5.7	0.4	13.3	-1.7	22.5	19.7	14.5	16.9	18.2	21.4	18.4	11.8(0.1)
	서비스업생산	6.4	4.8	3.2	-0.4	3.4	-0.3	2.4	1.9	3.7	2.0	5.7	4.0	2.3	3.1	3.9	4.8	2.7	3.6(0.9)
소비	소비재 판매	3.9	2.9	1.4	-4.2	1.0	-4.7	1.5	2.8	10.8	2.6	9.9	4.9	7.5	5.1	6.6	3.6	5.1	6.2(1.0)
투자	설비투자	-0.9	-2.7	5.3	-13.4	-4.3	-17.9	-12.9	-9.9	10.2	-8.2	25.5	24.5	29.3	13.5	25.1	28.4	6.6	10.5(14.1)
물가		3.8	4.8	5.5	4.5	4.7	3.9	2.8	2.0	2.4	2.9	2.7	2.6	2.9	3.6	2.9	2.7	4.5	4.4(0.2)

주: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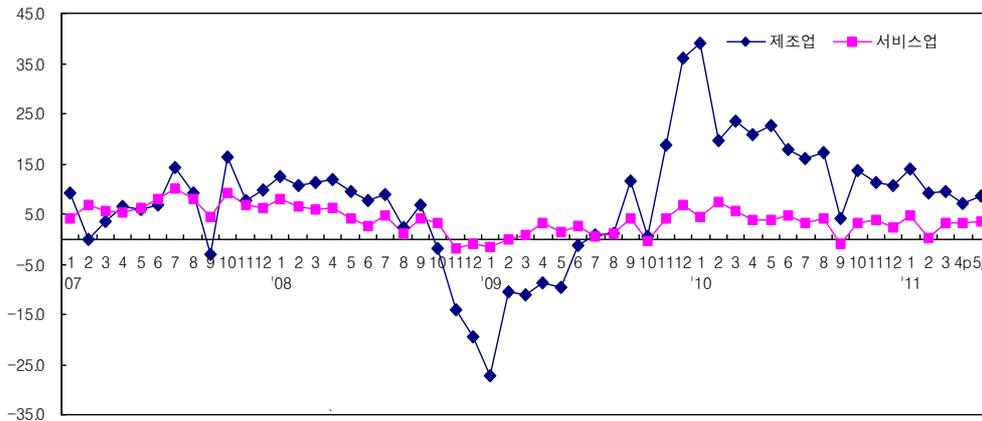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12.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지수는 6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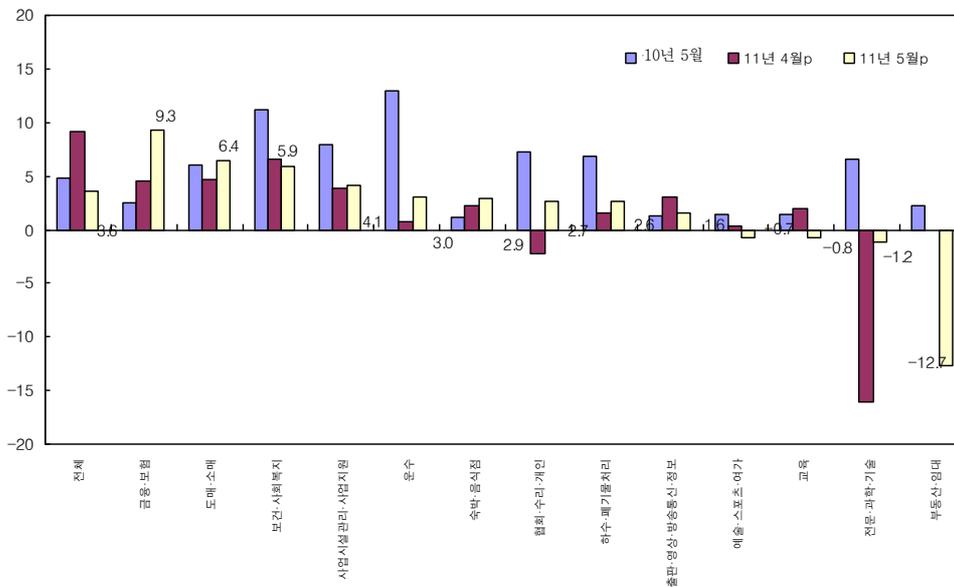
(단위: %, 전년동월대비)



주: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통계청(2011.6), 『2011년 5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 2011년 6월 생활물가지수는 122.3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변동이 없는 반면 전년동월대비 4.3% 상승하였으며, 특히 식품 부문은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5.2%

상승함.

- 2011년 6월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3.0% 하락, 전년동월대비 4.7% 상승함.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 지속

- 2011년 6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5,59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4천 명(1.7%)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842천 명으로 206천 명(1.4%) 증가하였고, 여성은 10,750천 명으로 228천 명(2.2%) 증가
- 2011년 6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성(74.0%)은 전년동월대비 0.2%p, 여성(51.3%)은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그림 3 좌측 참조).
- 2011년 6월 중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남성의 고용률은 71.5%로 전년동월대비 0.6%p, 여성의 고용률은 49.7%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그림 3 우측 참조).
- 2011년 6월 중 취업자는 24,75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2천 명(1.9%)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33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5천 명(1.9%)이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41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7천 명(2.0%)이 증가(그림 4 참조).
- 2011년 6월 중 실업자는 83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천 명(-4.4%)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남성 실업자는 50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9천 명(-10.5%) 감소, 여성 실업자는 33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천 명(6.7%) 증가
 - 실업률은 남성이 3.4%로 전년동월대비 0.5%p 감소, 여성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
- 2011년 6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44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천 명(0.2%)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22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천 명(0.4%)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22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 명(0.1%)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1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 명 증가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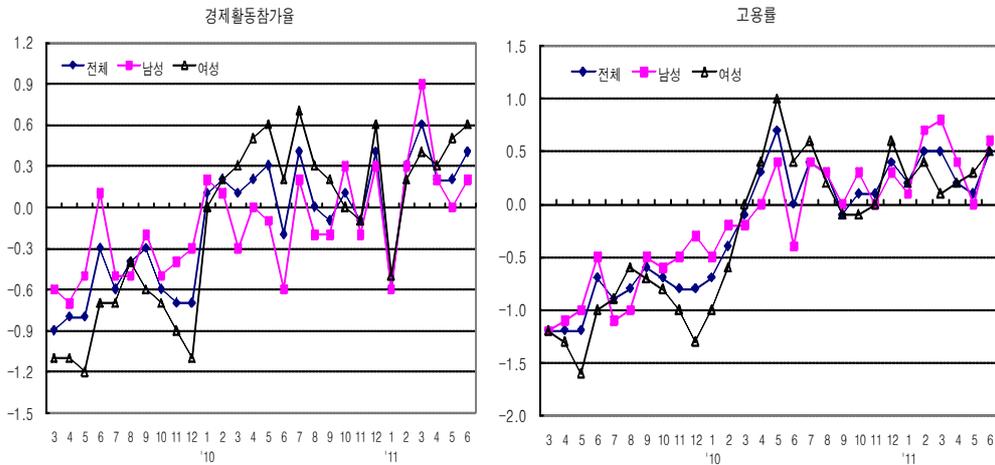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경제활동인구	24,166 (1.5)	25,038 (1.5)	25,158 (0.9)	24,993 (1.4)	24,796 (1.4)	24,488 (1.3)	25,437 (1.6)	25,480 (1.5)	25,592 (1.7)
참가율	59.8	61.8	62.0	61.5	60.8	59.9	62.0	62.1	62.4
취업자	23,037 (0.6)	24,170 (1.8)	24,280 (1.3)	24,120 (1.6)	23,989 (1.5)	23,459 (1.8)	24,572 (1.7)	24,661 (1.5)	24,752 (1.9)
고용률	57.0	59.6	59.8	59.3	58.9	57.4	59.9	60.1	60.3
실업자	1,130	868	878	873	808	1,028	865	819	839
실업률	4.7	3.5	3.5	3.5	3.3	3.9	3.4	3.2	3.3
비경제활동인구	16,254 (1.0)	15,493 (1.0)	15,415 (1.7)	15,656 (0.8)	15,962 (0.3)	16,392 (0.8)	15,559 (0.4)	15,523 (0.6)	15,441 (0.2)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2011. 7), 『2011년 6월 고용동향』.

〔그림 3〕 성별 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단위: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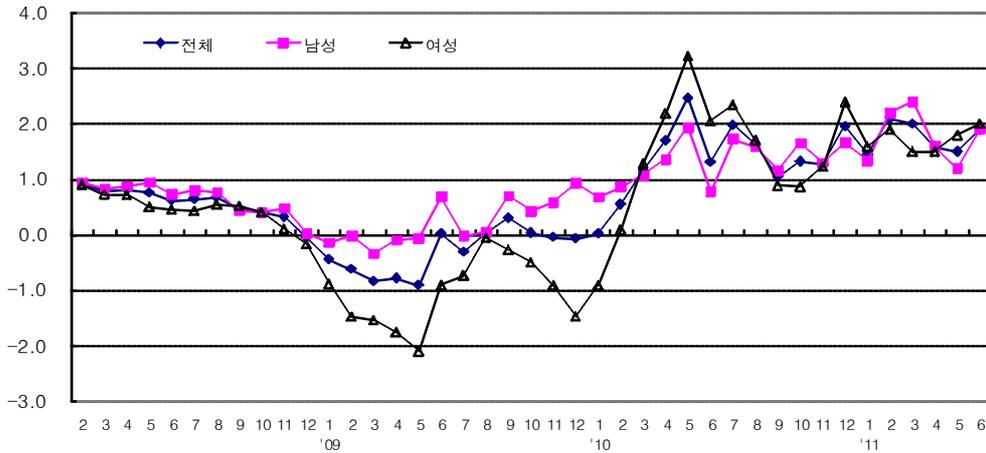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43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5천 명(9.6%) 증가.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283천 명으로 14천 명(-0.3%) 감소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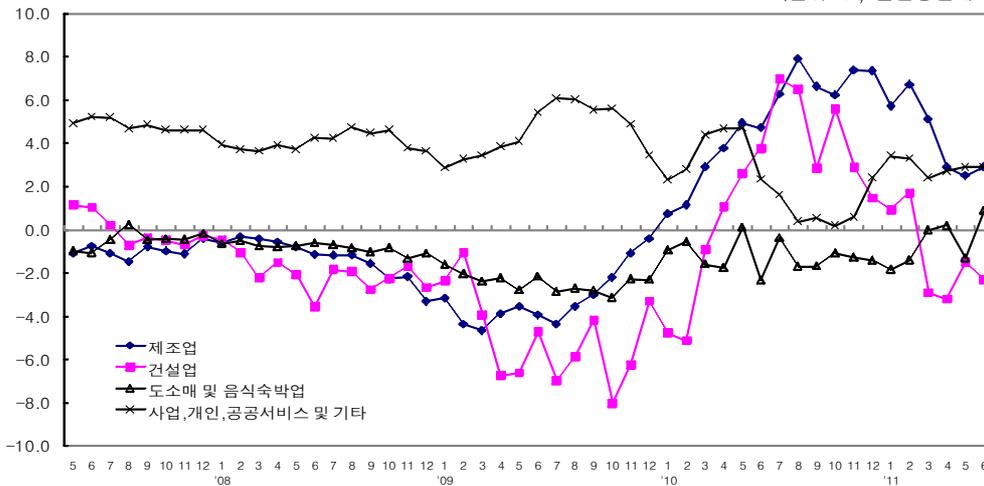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제조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 2011년 6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44천 명, 2.9%), 전기·운수·통신·금융업(137천 명, 4.9%), 제조업(118천 명, 2.9%) 등에서 증가한 반면, 건설업(-42천 명, -2.3%), 농림어업(-29천 명, -1.6%)에서는 감소 - 2010년 이래 제조업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그림 5 참조).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 산업	23,037 (0.6)	24,170 (1.8)	24,280 (1.3)	24,120 (1.6)	23,989 (1.5)	23,459 (1.8)	24,572 (1.7)	24,661 (1.5)	24,752 (1.9)
농림어업	1,235 (-11.7)	1,733 (-4.6)	1,820 (-2.1)	1,754 (-2.5)	1,544 (-2.2)	1,207 (-2.3)	1,736 (0.2)	1,777 (1.5)	1,790 (-1.6)
제조업	3,911 (1.6)	4,015 (4.5)	4,017 (4.7)	4,053 (6.9)	4,131 (7.0)	4,139 (5.8)	4,127 (2.8)	4,137 (2.5)	4,135 (2.9)
건설업	1,644 (-3.6)	1,816 (2.5)	1,843 (3.8)	1,791 (5.4)	1,761 (3.3)	1,641 (-0.2)	1,774 (-2.3)	1,787 (-1.5)	1,802 (-2.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532 (-1.0)	5,461 (-1.3)	5,421 (-2.3)	5,443 (-1.2)	5,442 (-1.3)	5,471 (-1.1)	5,457 (-0.1)	5,452 (-1.3)	5,472 (0.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859 (3.2)	8,294 (3.9)	8,336 (2.3)	8,244 (0.9)	8,234 (1.0)	8,097 (3.0)	8,529 (2.8)	8,568 (2.9)	8,580 (2.9)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834 (4.1)	2,831 (2.4)	2,822 (1.5)	2,816 (2.3)	2,855 (1.9)	2,880 (1.6)	2,933 (3.6)	2,925 (3.3)	2,959 (4.9)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1. 7), 『2011년 6월 고용동향』.

◆ 자영업자 감소 추세 지속

○ 2011년 6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03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5천 명(-0.8%)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72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27천 명(3.1%)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0,716천 명으로 627천 명(6.2%)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5,132천 명으로 33천 명(-0.6%) 감소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872천 명으로 66천 명(-3.4%) 감소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그림 6 좌측 참조).

－ 2010년 하반기 이후 고용주·자영업자는 음(-)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가 5월 들어 고용주는 소폭 증가했지만 6월에는 다시 감소하였고, 2011년 들어 무급가족종사자는 계속 증가하다가 6월에는 소폭 감소(그림 6 우측 참조).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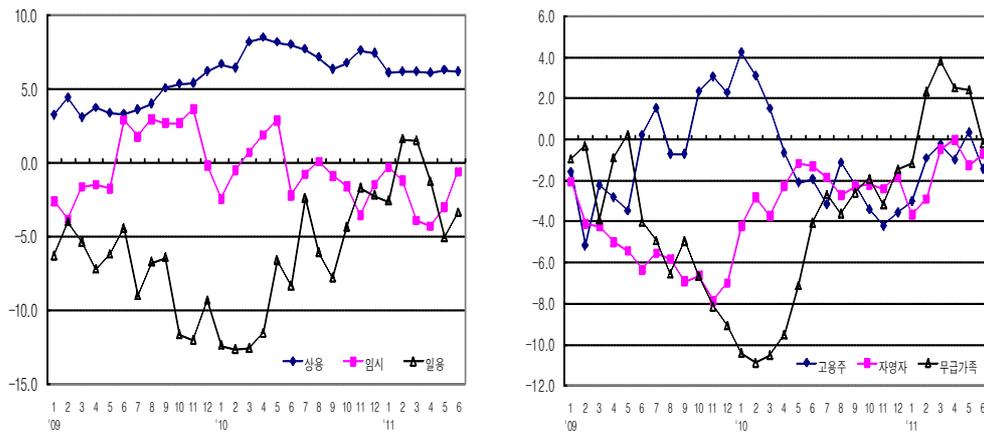
	2010					2011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 체	23,037 (0.6)	24,170 (1.8)	24,280 (1.3)	24,120 (1.6)	23,989 (1.5)	23,459 (1.8)	24,572 (1.7)	24,661 (1.5)	24,752 (1.9)
비임금근로자	6,638 (-3.5)	7,023 (-2.6)	7,088 (-2.0)	6,994 (-2.4)	6,778 (-2.5)	6,542 (-1.5)	7,004 (-0.3)	7,035 (-0.2)	7,032 (-0.8)
자영업주	5,514 (-1.9)	5,696 (-1.6)	5,720 (-1.5)	5,646 (-2.3)	5,514 (-2.6)	5,399 (-2.1)	5,657 (-0.7)	5,660 (-0.9)	5,668 (-0.9)
무급가족종사자	1,124 (-10.6)	1,327 (-6.9)	1,367 (-4.1)	1,348 (-3.0)	1,264 (-2.2)	1,143 (1.7)	1,348 (1.5)	1,374 (2.4)	1,364 (-0.2)
임금근로자	16,398 (2.3)	17,148 (3.8)	17,193 (2.7)	17,126 (3.3)	17,211 (3.2)	16,917 (3.2)	17,568 (2.5)	17,626 (2.2)	17,720 (3.1)
상용근로자	9,808 (7.1)	10,060 (8.2)	10,089 (8.0)	10,158 (7.1)	10,320 (7.3)	10,413 (6.2)	10,681 (6.2)	10,708 (6.3)	10,716 (6.2)
임시근로자	4,892 (-0.7)	5,179 (0.8)	5,165 (-2.2)	5,148 (-0.5)	5,052 (-2.2)	4,804 (-1.8)	5,041 (-2.7)	5,064 (-3.0)	5,132 (-0.6)
일용근로자	1,699 (-12.5)	1,909 (-8.8)	1,938 (-8.4)	1,820 (-5.4)	1,838 (-2.8)	1,701 (0.1)	1,846 (-3.3)	1,854 (-5.1)	1,872 (-3.4)
36시간 미만	4,851 (56.9)	3,197 (6.7)	3,094 (3.3)	3,329 (-1.8)	3,090 (4.4)	3,246 (-33.1)	3,210 (0.4)	3,200 (-0.1)	3,179 (2.7)
36시간 이상	17,671 (-8.7)	20,705 (1.1)	20,897 (1.0)	20,362 (2.4)	20,620 (1.1)	19,739 (11.7)	21,067 (1.7)	21,160 (1.5)	21,265 (1.8)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1. 7), 『2011년 6월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1년 6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17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5천 명(2.7%)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265천 명으로 368천 명(1.8%) 증가
 - 18시간 미만 취업자 1,024천 명 중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11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천 명(-13.1%) 감소

◆ 전년 동월 대비 고졸 실업률 증가

- 2011년 6월 중 연령별 실업률은 15~29세(7.6%, -0.7%p), 40대(2.1%, -0.1%p), 50대(1.9%, -0.1%p)에서 감소
 - 30대(3.4%, 0.0%p)는 변화 없고, 60세 이상(2.2%, 0.2%p)은 증가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고졸(4.2%, 0.2%p)에서는 증가하였고, 중졸 이하(2.0%, -0.6%p), 대졸 이상(3.1%, -0.4%p)은 감소
- 2011년 6월 중 전체 실업자 839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4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천 명,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792천 명으로 25천 명 감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1/4분기	2/4분기	6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3/4분기				5월	6월
전 체	1,130(4.7)	868(3.5)	878(3.5)	873(3.5)	808(3.3)	1,028(4.2)	865(3.4)	819(3.2)	839(3.3)
15~29세	408(9.5)	332(7.7)	355(8.3)	323(7.6)	297(7.1)	372(8.8)	332(7.9)	311(7.3)	320(7.6)
30~39세	234(3.9)	217(3.6)	209(3.4)	213(3.5)	194(3.2)	237(4.0)	211(3.5)	191(3.2)	205(3.4)
40~49세	192(2.9)	154(2.3)	151(2.2)	165(2.5)	151(2.2)	167(2.5)	145(2.1)	139(2.0)	142(2.1)
50~59세	150(3.2)	105(2.1)	101(2.0)	113(2.3)	114(2.3)	133(2.7)	107(2.0)	109(2.1)	103(1.9)
60세 이상	146(5.8)	61(2.1)	62(2.0)	59(2.0)	53(1.9)	119(4.5)	70(2.3)	69(2.2)	71(2.2)
중졸 이하	241(5.1)	131(2.5)	137(2.6)	131(2.5)	112(2.2)	195(4.1)	112(2.1)	118(2.2)	103(2.0)
고졸	493(5.0)	386(3.8)	406(4.0)	408(4.0)	392(3.9)	465(4.6)	408(4.0)	364(3.6)	424(4.2)
대졸 이상	396(4.2)	352(3.6)	335(3.5)	334(3.5)	304(3.1)	369(3.8)	345(3.4)	337(3.3)	312(3.1)
취업무경험실업자	57	46	60	35	38	52	45	42	47
취업유경험실업자	1,072	822	818	838	770	977	820	777	792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1. 7), 『2011년 6월 고용동향』.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동향

◆ 2011년 4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1.3% 상승

○ 2011년 4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719천 원으로 전년 동월(2,684천 원)대비 1.3%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4.2% 증가하였으나 초과급여의 증가율은 6.2%, 특별급여 증가율은 25.0% 감소하여 2011년 4월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2010년 4월 대비 1.6% 감소한 2,874천 원을 기록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8.6% 상승한 1,177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상승에 힘입어 전체근로자 임금총액은 플러스 증가를 기록함.

○ 실질임금은 2.7% 감소

-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 총액은 2,258천 원으로 전년대비 2.7% 감소
- 명목임금은 전년동월에 비해 증가했으나, 물가가 반영된 실질임금은 2011년 2월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그림 7 참조).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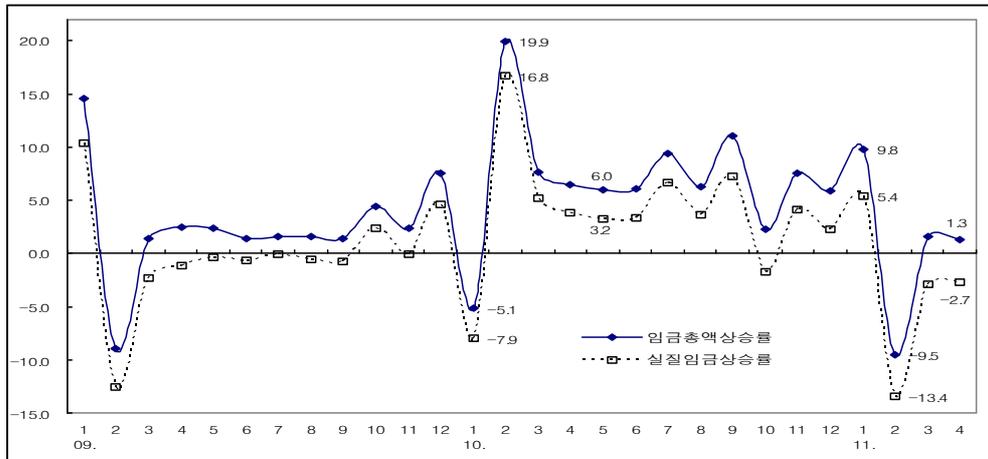
(단위: 천 원/월, 2005=100.0, %)

	2008	2009	2010	2011							
				1/4분기		2/4분기		1/4분기			
				3월	4월	1/4분기	2월	3월	4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569 (-)	2,636 (2.6)	2,816 (6.8)	2,825 (7.0)	2,689 (7.6)	2,684 (6.5)	2,830 (0.2)	2,768 (-9.5)	2,732 (1.6)	2,719 (1.3)	
상용 근로자	임금 총액	2,802 (-)	2,863 (2.2)	3,047 (6.4)	3,030 (7.0)	2,882 (7.2)	2,921 (6.5)	2,992 (-1.3)	2,916 (-11.5)	2,899 (0.6)	2,874 (-1.6)
	정액 급여	2,057 (-)	2,139 (4.0)	2,234 (4.5)	2,210 (4.1)	2,217 (4.3)	2,215 (4.7)	2,308 (4.4)	2,293 (4.6)	2,323 (4.8)	2,309 (4.2)
	초과 급여	179 (-)	175 (-2.2)	196 (12.2)	183 (17.4)	192 (19.4)	190 (14.4)	168 (-8.4)	162 (-8.9)	176 (-8.0)	179 (-6.2)
	특별 급여	566 (-)	550 (-2.8)	617 (12.3)	637 (15.1)	472 (17.7)	515 (12.2)	516 (-18.9)	462 (-50.1)	399 (-15.4)	386 (-25.0)
임시·일용근로 자 임금총액	1,052 (-)	1,073 (1.9)	1,056 (-1.6)	1,052 (-2.4)	1,013 (-5.6)	1,084 (3.3)	1,149 (9.2)	1,143 (9.2)	1,142 (12.8)	1,177 (8.6)	
실질임금 (전체 근로자)	2,342 (-)	2,337 (-0.2)	2,426 (3.8)	2,465 (4.2)	2,338 (5.2)	2,322 (3.8)	2,364 (-4.1)	2,311 (-13.4)	2,269 (-2.9)	2,258 (-2.7)	
소비자물가지수	109.7 (4.7)	112.8 (2.8)	116.1 (2.9)	114.6 (2.7)	115 (2.3)	115.6 (2.6)	119.7 (4.5)	119.8 (4.5)	120.4 (4.7)	120.4 (4.2)	

주: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7]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 건설업의 임금상승이 가장 높은 반면, 교육서비스업의 임금감소가 가장 높음.

<표 7> 산업별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월, %)

	2010	2011		
		4월	3월	4월
전 산업	2,816 (6.8)	2,684 (6.5)	2,732 (1.6)	2,719 (1.3)
광업	3,000 (7.3)	2,787 (11.5)	3,141 (18.9)	2,878 (3.2)
제조업	2,985 (9.1)	2,870 (9.8)	2,781 (6.3)	2,852 (-0.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455 (7.0)	4,182 (2.0)	5,614 (-2.6)	4,224 (1.0)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441 (5.2)	2,271 (5.5)	2,357 (1.8)	2,332 (2.7)
건설업	1,944 (7.9)	1,832 (7.7)	2,200 (9.4)	2,135 (16.5)
도매 및 소매업	2,769 (7.1)	2,599 (5.1)	2,842 (1.5)	2,755 (6.0)
운수업	2,381 (5.4)	2,358 (3.5)	2,287 (2.5)	2,370 (0.5)
숙박 및 음식점업	1,462 (5.0)	1,424 (3.5)	1,547 (9.3)	1,598 (12.2)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3,385 (4.7)	3,158 (2.2)	3,804 (14.7)	3,487 (10.4)
금융 및 보험업	4,680 (4.7)	4,487 (5.1)	4,893 (0.8)	4,584 (2.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65 (4.3)	1,802 (1.5)	1,925 (2.2)	2,002 (11.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957 (6.9)	3,738 (6.1)	3,665 (-4.5)	3,735 (-0.1)
사업서비스업	1,848 (8.2)	1,788 (9.3)	1,647 (-8.2)	1,640 (-8.3)
교육서비스업	3,157 (1.4)	3,102 (3.7)	2,890 (-3.1)	2,837 (-8.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94 (2.4)	2,518 (2.3)	2,388 (-6.6)	2,431 (-3.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107 (0.9)	1,984 (6.5)	2,057 (4.6)	1,930 (-2.7)
협회, 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02 (4.0)	2,015 (5.5)	2,069 (3.0)	2,129 (5.7)

주 :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1년 4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건설업(16.5%), 숙박 및 음식점업(12.2%), 부동산업 및 임대업(11.1%) 순으로 나타남.
- 반면, 2011년 4월 전년동월대비 임금이 감소한 산업은 교육서비스업(-8.5%), 사업 서비스업(-8.3%) 등으로 이는 특별급여가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이며,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남.
- 금융업은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정액급여가 낮은 것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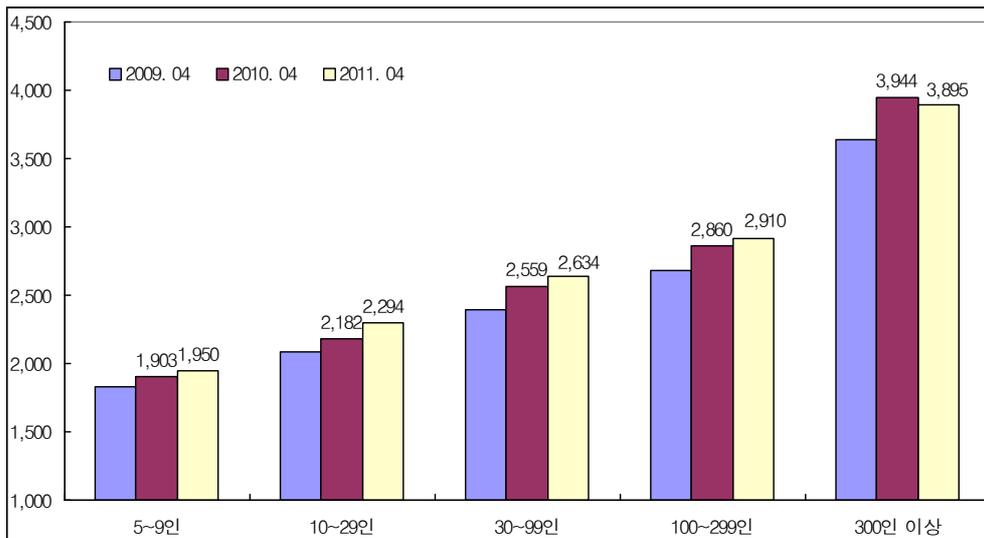
◆ 5~299인 규모에서 명목임금 상승

○ 2011년 4월 규모별 명목임금상승률은 5~299인 규모에서 상승

- 5~299인 규모의 명목임금상승률은 2011년 4월 기준 2,42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3,895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 감소함.
-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 하락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감소했다가 2010년 증가한 특별급여의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그림 8]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총액

(단위: 천 원/월)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8〉 사업체규모별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월, %)

	2010	2011		
		4월	3월	4월
5인 이상 전체	2,816 (6.8)	2,684 (6.5)	2,732 (1.6)	2,719 (1.3)
5~299인	2,479 (6.0)	2,366 (5.9)	2,429 (0.4)	2,429 (2.6)
5~9인	1,971 (4.5)	1,903 (3.8)	1,931 (3.0)	1,950 (2.5)
10~29인	2,318 (6.0)	2,182 (4.8)	2,302 (3.5)	2,294 (5.1)
30~99인	2,659 (6.0)	2,559 (6.9)	2,616 (-1.0)	2,634 (2.9)
100~299인	2,991 (5.7)	2,860 (6.7)	2,944 (0.0)	2,910 (1.8)
300인 이상	4,140 (8.7)	3,944 (8.4)	3,968 (6.6)	3,895 (-1.2)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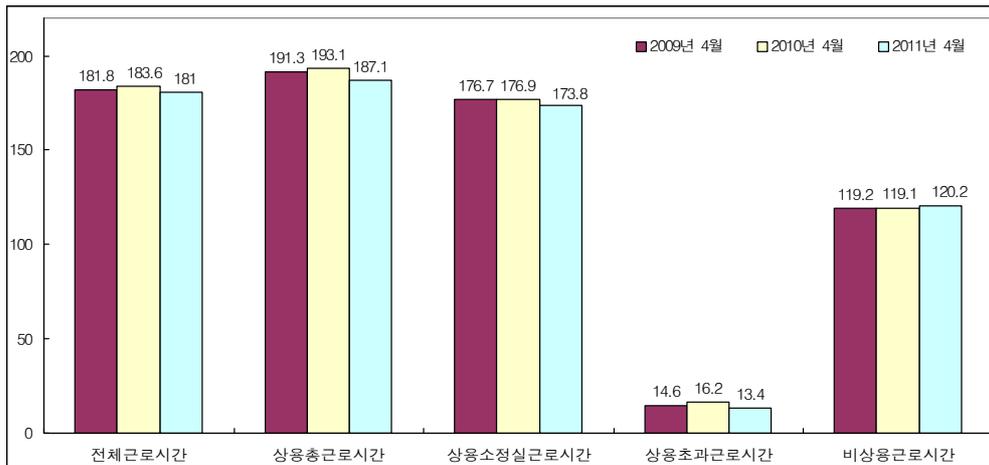
◆ 2011년 4월 근로시간, 전년동월대비 2.6시간 감소

○ 2011년 근로시간, 전년동월대비 1.4% 감소

- 2011년 4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81.0시간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183.6시간)에 비해 1.4% 감소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87.1시간으로 전년동월(193.1시간)대비 3.1% 감소했으며, 소정실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은 각각 1.8%, 17.3% 감소함(그림 9 참조).
-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20.2시간으로 전년동월(119.1시간)대비 0.9% 증가함.

〔그림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숙박 및 음식점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 감소

○ 숙박 및 음식점업과 제조업은 증가한 반면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등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

- 2011년 4월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192.3시간으로 16.8%, 건설업은 159.8시간으로 4.6% 증가함.
- 한편, 2011년 4월 제조업(196.3시간, -2.1%), 도매 및 소매업(179.7시간, -3.3%), 사업서비스업(173.8시간, -6.1%)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0년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제조업(196.3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교육서비스업(155.5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표 9〉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월, %)

	2008	2009	2010	2011		
				4월	1/4분기	2/4분기 4월
전 산업	176.7 (-)	176.1 (-0.3)	176.7 (0.3)	183.6 (1.0)	172.1 (-0.5)	181.0 (-1.4)
광업	180.3 (-)	187.6 (4.0)	188.1 (0.3)	193.3 (-0.6)	180.0 (-1.4)	191.1 (-1.1)
제조업	190.1 (-)	188.5 (-0.8)	192.1 (1.9)	200.6 (2.8)	185.8 (-0.5)	196.3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73.5 (-)	177.9 (2.5)	176.9 (-0.6)	186.9 (1.1)	171.8 (-0.3)	188.2 (0.7)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93.5 (-)	194.0 (0.3)	192.9 (-0.6)	198.9 (-1.3)	180.5 (-4.7)	190.8 (-4.1)
건설업	155.7 (-)	147.2 (-5.5)	146.1 (-0.7)	152.8 (1.1)	152.9 (4.9)	159.8 (4.6)
도매 및 소매업	178.7 (-)	179.0 (0.2)	177.2 (-1.0)	185.8 (0.5)	170.6 (-1.2)	179.7 (-3.3)
운수업	170.7 (-)	184.4 (8.0)	184.6 (0.1)	187.9 (0.1)	175.4 (-3.7)	183.2 (-2.5)
숙박 및 음식점업	170.2 (-)	164.3 (-3.5)	163.7 (-0.4)	164.6 (-0.4)	180.4 (12.6)	192.3 (16.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6.2 (-)	166.8 (0.4)	166.2 (-0.4)	175.9 (1.2)	160.1 (-1.6)	168.6 (-4.2)
금융 및 보험업	165.9 (-)	166.8 (0.5)	165.3 (-0.9)	175.1 (-0.3)	158.7 (-2.0)	166.1 (-5.1)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4.5 (-)	202.0 (-1.2)	200.4 (-0.8)	206.0 (-0.1)	192.2 (-3.1)	194.7 (-5.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7.5 (-)	167.7 (0.1)	166.3 (-0.8)	175.0 (-0.6)	161.5 (-0.7)	170.2 (-2.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81.3 (-)	179.0 (-1.3)	180.1 (0.6)	185.1 (0.2)	166.2 (-5.4)	173.8 (-6.1)
교육서비스업	150.8 (-)	153.7 (1.9)	149.9 (-2.5)	155.9 (-2.2)	149.0 (1.3)	155.5 (-0.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6.1 (-)	176.4 (0.2)	176.5 (0.1)	183.9 (1.0)	169.5 (-1.4)	178.8 (-2.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59.1 (-)	161.6 (1.6)	158.7 (-1.8)	164.4 (-1.5)	152.7 (-1.4)	161.3 (-1.9)
협회, 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75.8 (-)	175.5 (-0.2)	173.9 (-0.9)	179.1 (0.5)	171.4 (-0.3)	179.2 (0.1)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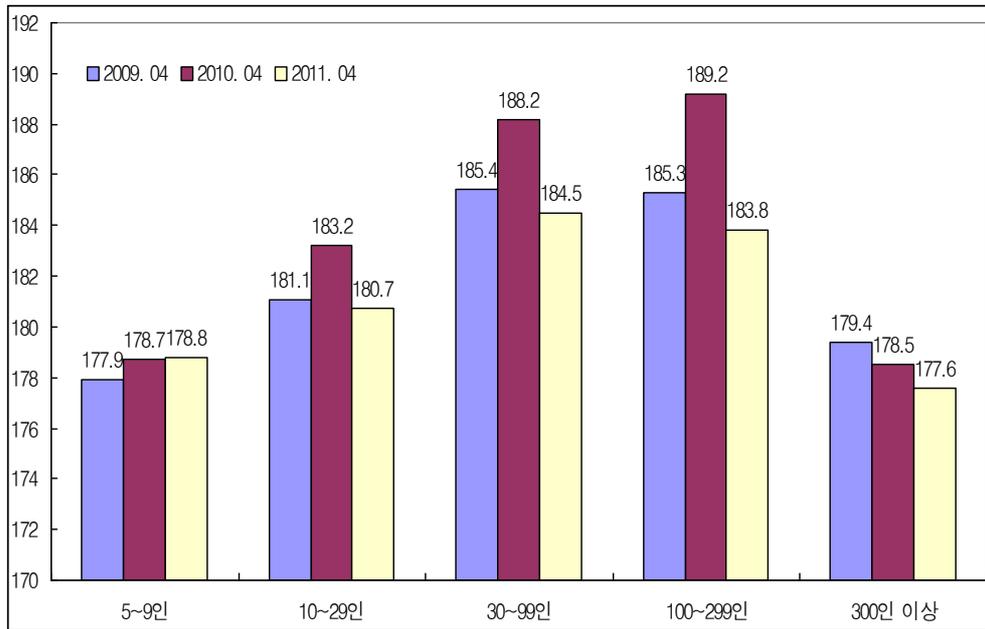
◆ 10인 이상 규모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1년 4월 규모별 근로시간은 10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서 감소

- 상용근로자 5~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1.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4% 감소하였으며, 300인 이상 사업체도 177.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5% 감소함.
- 세부 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 4월 5~9인은 0.1% 증가한 반면, 10~29인 1.4%, 30~99인 2.0%, 100~299인 2.9% 감소함.

[그림 10]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월)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발생 추이

- 2011년 1월 1일부터 7월 24일 현재까지 노사분규 누적발생건수는 31건으로 나타나며, 근로손실일수(2011년 7월 20일 기준)는 237,864일로 집계됨.

〈표 10〉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 개소, %)

	2011. 1. 1 ~ 2011. 7. 24	전년 동기	증 감(%)
노사분규 발생건수	31	38	-
총 결	21	26	-
진 행	10(7)	12(3)	()는 전년도 이월
근로손실일수	237,864	239,135	0.5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7월 20일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 주요 분규사업장 동향

○ 장기분규 사업장

■ 한진중공업

- 노조 지회의 노사협의 이행합의서에 따른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노조 지회의 이행합의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지회 소속의 상집간부들이 항의한 바 있음.
- 7월 9일에는 부산역 및 봉래 로터리에서 2차 희망버스 행사가 실시됨(7,000여 명 규모). 일부 연행자가 발생함. 경찰과 참가자가 충돌하여 일부 부상을 입기도 함.
- 7월 11일에는 사측이 채길용 지회장에 대한 업무방해 등 고소·고발 취하함. 또한 7월 1일에 부산고용청에 제출한 ‘노사합의사항 효력 관련’ 질의 반례를 요청함. 7월 12일에는 채길용 지회장이 영도경찰서에 자진출두하기 전 성명서 발표. 주요 내용은 “사측이 금속노조와 즉각 임단협 교섭 진행”하여야 하며, “금속노조·부산양산지부·한진중공업지회는 김진숙 씨의 안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 등임.)

- 7월 13일 사측은 생산직 근로자(763명)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노조에 해고자 및 외부인의 노조사무실 출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함. 이후 15일에는 실직자 취업지원을 위한 4자(노, 사, 부산시, 부산고용청) 실무자회의를 개최함.2)
- 여전히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85호 타워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을 계속 중이며 고공농성에 4명이 합류하여 함께 농성 중임. 18일에는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사람 살리고 정리하고 철회를 위한 ‘희망의 단식단’ 단식돌입』 기자회견 개최함. 이날 기자회견에서 3차 희망버스가 7월 30일에 다시 부산에 올 것이며, 정리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희망의 단식단은 4가지 요구 관철시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한편, 해고자 170명 중 70여 명이 위로금 수령을 신청하였음. 동시에 복귀자를 중심으로 한 집체교육 참가자 600여 명은 7월 1일부터 다대포공장 등에서 교육 중임.
- 7월 20일에는 부산시장이 채길용 지회장, 이재용 사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3차 희망버스에 대한 부산시 입장을 전달하고 노사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당부함.

■ SC제일은행

- 노조는 임금인상 및 전 직원 성과급제 도입 반대 등을 주장하며 6월 27일부터 파업 돌입(조합원 2,721명 참가). 이에 사측은 전국 소매금융지점 366개 점포 중 43개 점포 영업중단(11.7%). 현재까지 노사간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황임.
- 파업참가 조합원들은 7월 18일부터는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C지구 유스호스텔 등 13개 숙박시설에서 거점파업 중임. 한편, 18일에는 김재율 지부장과 리처드힐 행장이 서울에서 면담 실시.
- 노(사)의 핵심쟁점은 임금총액 정규직 4(2)%, 비정규직 8(4)% 인상. 전 직원 성과급제 및 저성과자 임금삭감제 반대(도입), 근로조건 조항 전 직원 적용(수용불가), 명예퇴직 상설화 폐지 반대(폐지), 근로시간면제 한도 12명(11명)

노조 수정안	사측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3%, 비정규직 6% 인상 - 합의를 특별보로금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급제 TFT 구성 논의 - 임금 2% 인상(비정규직 임금 4%) - 통상임금 100% 특별보로금 - 명예퇴직제도 폐지

- 1) 7월 20일경, 사측은 노조에 김진숙 씨 등 고공농성자에 대한 법원 간접강제 신청사실 통지 및 심문 기일(8.11)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2) 한진중공업 퇴직자지원협의회 공동대표 및 실무협의회 구성함. 동시에 한마음지원센터(소장: 한진중공업 노무1팀 차장) 개소를 결정하였음. 협의회의 공동대표는 지회장(노측), 대표이사(사측), 경제산업본부장(부산시), 부산고용청장 등임.

- 7월 22일에는 UNI(Union Network International, 국제사무직노조연합) 한국협의회가 SC제일은행 본점 앞에서 ‘SC제일은행지부 런던 원정투쟁단 출정’ 기자회견 개최함.
- 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
 - 금호산업(주) 고속사업부는 1사 2노조로 복수노조 사업장임(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금호고속지회와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광주전남지역자동차노조 금호산업고속사업부지부). 기존 노조인 한국노총 산하의 지부는 1975년 설립하였으나 이 노조 지부에 반발하여 일부 조합원이 2010년 7월에 민주노총 운수노조에 가입함. 노조원 수는 348명임(기존 노조는 1,545명).
 - 운수노조 전북고속 지회는 노조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8일부터 파업을 계속 중임. 지난 7월 1일에는 사측이 양 노조 지부가 요구한 단체교섭에 불참통보를 한 바 있음.
 - 노(사)간 주요쟁점은 노조인정(불가), 노조사무실 및 비품 제공(불가), 조합비 일괄공제(불가) 등임.
 - 한편, 7월 11일에는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련 금호고속지부가 성명을 통해 “우리 노조는 회사와 유효한 임단협을 체결한 유일한 노조”이며, “유효한 단협기간 내의 어떤 협상요구도 단호히 배격”하고, “조직 내의 갈등을 유발하는 상호비방, 노조를 폄훼하는 행위나 흑색선전에 대하여 규탄하며 자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운수노조 전북고속 지회는 7월 9일에 이르러서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노조원 행동지침을 시달한 바 있음. 교섭을 병행하기로 하면서 상호간 교섭원칙을 정하려고 하나 여전히 입장차가 있음. 7월 초 쟁위대책위원 중심으로 파업을 진행하다가 지난 18일부터 노조 지회의 파업참가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
 - 7월 19일, 노사는 실무교섭을 개최하였으나 상호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종료함. 주요 쟁점 중 노조인정에 대해서는 사측이 수용하기로 하고, 노조사무실 제공 및 조합비 일괄공제에 대해서는 기존 노조의 임단협 수준으로 수용하기로 함. 다만 해고자 복직 및 징계 철회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성당새마을금고
 - 성당새마을금고는 대구 소재의 사업장임.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임. 2009년 5월,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명예퇴직자를 모집하였고, 이에 근로자 7명이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전국새마을금고노조(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에 가입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함.
 - 노조는 교섭 및 조정을 거치고 2009년 9월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부분

파업 이후 2009년 10월 20일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이에 사측은 이날 동시에 직장 폐쇄를 단행함. 2010년 2월 노조가 3월 2일자로 업무복귀를 하자 사측도 직장폐쇄를 철회함. 그 이후 2010년에도 임금교섭의 진전이 없자, 조정신청을 거쳐 경고 파업에 돌입함. 이윽고 사측은 작년 6월 상당시장분점을 폐점하였고, 8월에는 정리해고 관련 노사협의를 결렬되면서 사측이 희망퇴직 시행을 통보함.

- 노(사)간의 주요쟁점은 기존 본봉 대비 약 30% 인상(호봉급 2만 원), 중식비 20만 원(출근일 6,000원), 가족수당 1인당 5만 원(배우자 4만 원, 그 외 3만 원), 정리해고 철회(수용불가) 등임.
- 올해 4월, 6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자 3명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함. 한편, 6월에 이르러 사측 이사회가 금고를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6월 22일부터 파업 철회 및 업무복귀 입장을 밝히고 사측에 통보한 바 있음. 그러나 노조는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하여 파업에 돌입,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파업참가자는 7명이며, 사측은 이날부터 계속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음.
- 7월 6일 노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측은 정리해고자 3명 명예퇴직·금고 정상화 시까지 임단협 요구 유보를 제안하였으나 노조는 정리해고자 3명 중 2명은 명예퇴직, 1명은 전체 직원 중에서 퇴직자를 선발하자고 제안하였음.

■ 공공노조 서경지부 홍익대학교 분회

- 지난 2월 20일, 공공노조 서경지부 홍익대학교 분회 조합원들은 용역업체의 입찰 포기해고된 바 있음. 본관 및 총장실 점거 농성 이후 49일 만에 조합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및 임금인상안이 합의에 이룸.
- 그러나 최근 홍익대학교측이 이들이 벌인 총장실 점거농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지난 5월에 제기된 이 소송의 손해배상금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공서비스노조 서경지부 지부장 박명석 등 간부 5명과 홍익대 분회장 이숙희 등 6명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농성기간 대체인력 인건비와 식대, 교직원 연장근무 수당 등을 모두 합쳐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이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관련서류를 송달받아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함.
-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던 청소노동자를 대량 해고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홍익대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3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 주요 분류사업장 등

■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123개사 124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조합원은 3만 9천여 명임.

- 사용자측(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은 지난 2009년 8월, 산별중앙교섭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 해산을 결정한 바 있음. 이에 현재는 특성별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지난 5월 3일부터 민간중소병원 중앙교섭을 시작으로 특성별 교섭 진행을 하고 있으나 교섭의 진전이 보이지 않는 곳이 다소 발생함. 민간중소병원(36개소)은 5, 6월에 4차례 중앙교섭을 실시했고, 지방의료병원(27개소)은 6월에 3차례 중앙교섭을 실시함. 그러나 사립대병원(29개소)과 국립대병원(5개소)은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여 상견례조차 성사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임단협 교섭이 진전이 없을 경우, 8월 중하순께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으며, 7월 말에서 8월 초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8월 중하순께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하겠다고 밝힘.
- 지난 3월 3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1년 산별교섭요구안 등을 확정된 바 있으며 주요한 내용으로는 임금 9.5% 인상,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시급 5,410원(월 1,130,690원), ISO 26000(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준수, 병원인력문제 해결, 의료공급체계 혁신 등임.

■ 금속노조

- 금속산업 노사는 4월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6월까지 8차 교섭을 진행하면서 최저임금 시급 50원 인상안 등 일부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교섭 결렬’ 선언을 한 바 있음. 이에 6월 중순경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산별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사업장보충교섭 관련 조정신청을 하였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함(74.1% 찬성).
- 지난 7월 6일 노조는 임단투 승리를 위한 경고성 파업을 실시함. 이날 경고파업에 12개 지부, 약 8천여 명이 1~4시간의 경고파업에 돌입. 이미 노사는 7월 5일, 9차 산별중앙교섭을 개최함.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시급을 30원 인상한 4,48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함.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노조는 수용하지 않은 상황임.
- 한편, 7월 18일에는 보도자료(불법파견 정규직화·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기 비정규직 희망버스 5박6일 전국순회)를 통해 “금속노조의 ‘금속비정규투쟁단위’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기 희망버스’ 2대를 타고 7.18(월)~7.23(토) 5박6일 전국을 순회”하기로 하였고,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 1주년을 맞아 대법원 판결 이행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힘.
- 7월 12일에는 산별중앙교섭에서 최종 의견이 접근되어 7월 13일에 예정된 4시간 파업계획을 철회한 바 있음. 의견 접근된 주요 내용은 ①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통상시급은 4,620원과 법정최저임금+90원 중 높은 금액 적용)과 월 통상

임금(높은 통상시급 X 227시간) 중 높은 금액 적용, ② 복수노조시 노사가 합의하는 자율적 교섭방식 준수, ③ 발암물질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2년마다 발암물질 조사, 노사 공동으로 조사관련 기관과 방법의 결정, 발암물질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발암물질 관련 합의에 대해 사내하청 노동자 동일 적용 노력 등 합의, ④ 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선을 위하여 '12.9월까지 금속노사공동위원회와 실노동시간 단축소위원회를 운영 등임.

- 7월 15일까지 4개 지부가 지부집단교섭 잠정합의에 이룸(7월 7일 경남, 7월 14일 울산·충남, 7월 15일 포항), 7월 14일에 울산지부 노사는 지부집단교섭에 잠정합의함. 다음날인 15일에는 포항지부 노사가 지부집단교섭 잠정합의. 7월 21일에는 대전·충북지부가 지부집단교섭 잠정합의함. 7월 21일, 미합의 2개사가 잠정합의에 이룸. 같은 날 잠정합의 사업장 7개 노조가 지회별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7개 노조 전부 잠정합의안 가결

■ 금융노조

- 노사는 5월 12일 이후 교섭을 개최한 바 없음. 금융노조는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을 확정하여 사측에 전달하였고, 사측도 입장을 전달함. 노조는 총액임금 8.0% + @ 인상안을 제시하였으나 사측은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음. 또한 노조의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논의불가 입장을 전달함. 성과연봉제 및 개인별 성과차등제 도입 금지 및 전임자처우의 노사자율 결정에 대해서도 사측은 논의불가 입장을 밝힘.
- 지난 3월 31일 노조는 사측에 산별중앙교섭요구안을 제시하고 4월 11일 상견례 개최를 요구한 바 있음. 5월 12일에 이르러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개최하였고, 양측 요구안을 설명하였으나 교섭이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7월 6일, 노조는 34개사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중노위는 34개사 중 29개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현재 1사 다수노조인 5개사(외환, 농협, 우리, 씨티, 신보)는 교섭미진을 이유로 34개사 모두 행정지도 결정
- 노조는 7월 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³⁾를 시작으로 7월 30일 100만 서명운동 마무리(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 관치금융 철폐 관련), 8월 6일 금융노조 신입직원 전체 집회 및 8월 21일 각종 준법투쟁 이후, 9월초 산별 총파업을 계획 중에 있음.

■ 대우조선해양

- 경남 거제에 소재한 이 사업장은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1개 노조가 있음. 지난 6월 28일부터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부분파업 계속(조합간부 위주에서 간헐

3) 7월 21일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됨(68.9%).

적으로 일반조합원 참가)

- 지난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노사는 타임오프 관련 13차례 실무교섭을 가졌으나 진전이 없었고, 올해 3월에는 노조가 임금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교섭을 해 옴. 그러나 5월에 들어서 임금 및 타임오프 관련 교섭의 진전이 없자 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타임오프 관련은 조정 미신청), 조정중지 결정에 이르자 지난 6월 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함(83.6% 찬성).
- 7월 18일경에 노사는 본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상호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진전이 종료함. 노(사)간 주요쟁점은 기본급 108,489원(5.58%) 인상(기본급 74,335원(3.8%) 인상), 통상임금에 연장수당 20시간분(270,000원) 추가(수용불가), 가족수당 신설(배우자 15,000원, 자녀 1인당 10,000원) 및 통상임금에 포함(수용불가), 2011년 당기순이익의 2%인 200여 억 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30억 원). 이에 사측은 성과배분 상여금(통상임금 200~400%), 교섭타결 격려금(380만 원), 회사 주식 매입지원금(통상임금 200%) 등을 별도로 제시함. 근로시간면제에 관해서는 노조가 단협 갱신될 때까지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고시한도에 따라 22,000시간(풀타임 11명)을 주장하고 있음.4)

■ 삼성중공업

- 노동자협의회는 6월 9일 사측에 임금요구안을 제시하고, 6월 21일 상견례를 개최하여 교섭원칙 합의 후 교섭 개시. 그러나 노동자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조직체에 불과함. 하지만 지난 7월 11일, 노동자협의회가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 7월 18일까지 10차 교섭을 진행하다, 7월 19일 노동자협의회는 사내에서 ‘임금 쟁취 결의대회’ 개최 예정. 사측은 노동자협의회의 집단노무제공 거부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한다는 입장. 현재 삼성중공업 노(사)의 주요쟁점은 기본급 130,103원(7.82%) 인상(기본급 53,240원(3.2%) 인상), 무상주 500주 지급(수용불가), 전 사원 1년 특별 승급(수용불가) 등임.
- 7월 22일 노동자협의회 대의원회의에서 사측 수정안이 부결됨. 이날 노동자협의회 집행간부 등 2,000여 명은 사내 집회 후 대부분 귀가함.

■ 국민연금공단

- 2010년 3월 사측은 노조에 단협해지 통보하고 5월과 6월에 2차례 본교섭을 실시하여 연봉제 확대(현 2급→ 3급), 불합리한 단협 전면개정 등을 요구함. 7월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 이후 실무교섭을 재개하여 2011년 2월 2010년 임단협을 잠정합

4) 2010년 7월 1일자로 사측은 전임자 27명에 대해 전원 무급휴직 인사발령을 낸 바 있음.

- 의하였으나 3월 노조총회에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38.5% 찬성으로 부결됨.)
 - 2011년 6월 노조는 2009년 임단협 쟁취, 해고 및 징계 철회를 주장하며 오후 5시간 파업에 돌입한 이후, 7월 7일부터 지회별 순환파업에 돌입함.
 - 현재 노사간 주요쟁점으로는 징계문제, 3급 연봉제, 정년 연장 등이 문제되고 있음. 지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노조도 불법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징계수위가 과도하다는 입장에 대해 사측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서로 맞서고 있음. 현재 1·2급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 연봉제의 경우, 3급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노조는 2009, 2010년 임단협을 우선 타결하고 3급 연봉제 도입문제는 별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임. 정년 연장, 시간외 수당의 기본급호, 신규 직원 초임 호봉제한 등에 관해서는 사측이 노사공동의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임.

■ 삼화고속

- 노조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관례상 7월부터 교섭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자 지난 6월, 노조는 조정을 신청함. 5월 18일에는 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를 한국노총(자동차노련 삼화고속노동조합)에서 민주노총(운수노조 버스본부 삼화고속지회)으로 변경함(재적대비 93.3% 찬성).
 - 6월 운수노조 삼화고속지회는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한부 파업 돌입. 사측이 노조 파업으로 인한 수익금 감소를 이유로 7월 임금을 미지급하자, 이에 항의해 노조는 임금인상 및 체불임금 18억여 원 지급 등을 요구하며 재파업에 돌입함. 결국 7월 8일경 사측이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면서 7월 11일 노조는 업무복귀함.
 - 지난 7월 14일 예정된 노사 교섭은 제2노조(한국노총 고속노조 삼화고속지부, 지부장 김일호, 80여 명, 2011년 7월 설립)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개시를 요구하며 교섭장(삼화고속 인천영업소) 입구 등을 점거하여 무산됨.
 - 7월 19일 노조는 심야운행 전면중단 결정(광역 20개 노선 239대 운행 중단). 한편 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교섭에 대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유로 거부함. 7월 20일, 사측은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를 냈(제1노조 제외한 제2, 3노조).⁶⁾
 - 7월 22일에는 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전국공공운수노조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로 명칭변경 및 향후 투쟁방향 논의(투쟁방향 등은 지도부

5) 잠정합의 주요내용으로는 연봉제 3급까지 확대(단, 3급 중 본부 근무자 및 지방근무자로서 2급 보직자에 한정), 근로시간면제: 풀타임 7명, 무급 2명(기존 전임자 10명) 등임.
 6) 7월 21일, 사측은 7월 20일 제1노조를 제외하고 제2, 3노조를 공고하였다가 노조측의 부당노동행위 고소로 인하여 다음날인 21일에 제1노조를 포함한 수정 공고를 냈.

에 일임)

- 노사간 주요쟁점은 현 포괄적 임금제 폐지, 월 기본급 인상(고속버스 시급 690원, 광역버스 시급 973원 인상 등임.

◆ 노동계 동향

○ 최저임금 심의위원 중 노측 위원 전원사퇴 및 최저임금 무효선언

-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9차 회의(6월 30일)가 사용자측의 무성의와 최저임금위원장의 무기력한 회의운영으로 더 이상의 진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7월 1일자로 전원 사퇴함.7) 이에 사측 위원들도 전원사퇴하기에 이룸.
- 노사측 위원들의 의견이 대립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4,580원에서 4,620원까지로 중재안이 제시되자 한국노총 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사퇴하면서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게 됨.
- 한편, 7월 3일 민주노총 여성연맹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위원 18명이 사퇴 또는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법 개정과 민주성이 제고된 새로운 방식의 위원회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함.
- 7월 13일 양대 노총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날치기 처리한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고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투쟁 돌입을 시사

○ 양대 노총 울산본부, 복수노조 조직경쟁 최소화 노력 합의

- 7월 13일 양대 노총 울산본부는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수노조제도는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제도로 양 노총은 소모적 경쟁보다는 발전적 경쟁으로 지역 노조 조직률을 높여갈 것”임을 천명함.
- 특히 “복수노조 중 교섭창구 단일화에도 참여할 수 없는 노조가 절반을 넘어 결국 교섭권을 얻으려고 노조간 갈등과 대립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울산지역의 양대 노총은 조직간 소모적인 경쟁을 자제하고, 무노조 사업장 노조 설립이나 비정규직 조직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양대 노총,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전면 철회 주장

- 한국노총은 지난 7월 18일, 고용부가 발표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 “임금 근로조건 개선·차별해소·고용문제 등에 있어서 실질적 권한이 있는 원사업주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할 최종안에는 기존 노동법

7) 최종안: 노동계 4,780(10.6%), 경영계 4,455원(3.1%), 공익위원 최종 중재안 4,580(6.0%)~4,620(6.9%).

에 대한 당연한 법적 의무사항만 담고, 원사업주의 책임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 선택"한다며 비판함.

- 민주노총 또한 고용부의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대신 "사실상 위장도급에 불과한 사내하청을 폐기시키고 동일노동 동일가치, 동일사업장 동일고용을 위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함.

○ 복수노조 허용 이후, 삼성에도 노조 설립

- 7월 1일 복수노조가 시행되기 전, 삼성에버랜드에 노조(기업별 노조)가 설립된 사실이 확인됨. 지난 7월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 20일경 삼성에버랜드 노조가 용인시청에 설립신고를 낸 이후 23일 설립신고증을 받았다고 밝힘. 신고된 조합원수는 4명으로 알려짐. 언론에서는 사측에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선점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추측
- 한편, 지난 7월 13일에는 서울 남부고용노동청에 삼성노동조합(초기업단위 노조)이 설립 신고를 함.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설립 총회를 열고 노조 위원장으로는 박원우(삼성에버랜드), 부위원장은 조장희(삼성에버랜드), 상근 지도위원으로는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이 위촉됨.⁸⁾ 이 노조는 삼성에버랜드 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삼성노동조합은 삼성 전 계열사 소속의 노동자들뿐 아니라 협력업체,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그 조직대상으로 함.
- 그러나 삼성에버랜드측은 부위원장 조장희 씨에 대해 7월 14일과 18일 등 2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하고 본인에게 통보함. 조씨는 재심을 요청한 상태임. 해고사유는 "2009년 6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 동안 협력업체와의 상세한 거래 내역이 담긴 경영 기밀을 무단 유출하고 임직원 4,300여 명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를 외부로 빼내는 등 심각한 해사 행위"를 했다는 이유임.

◆ 경영계 동향

○ 한진중공업에 대한 외부세력의 불법행위 중단에 대한 성명발표

- 경총은 7월 9일 성명을 통해 한진중공업 노사가 6월 27일 노사합의 이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2차 희망버스'라는 명목으로 대

8) 삼성일반노조는 삼성계열사 하청노동자와 해고자들이 2003년 2월 삼성일반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해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약 때문에 인천시로부터 "근로자가 아닌 해고자를 가입시켰으므로 노조로 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노조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현행 노동법상 노조로 인정받지 못한 '법외 노조'가 된 것이다. 한편 복수노조 이전까지 삼성계열사 중 노조는 삼성생명노조가 유일하였음.

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

- 특히 “정치권, 노동계, 진보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은 한진중공업 정상화를 가로 막는 한진중공업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정부는 “외부 세 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타워크레인 집거자와 불법행위 주동 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 2012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 발표

-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은 2012년 최저임금으로 4,580~4,620원 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입장을 발표함. 경총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수 준은 다수의 영세기업들이 지킬 수 없는 수준”이며,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압 박에 굴복해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함. 공익위원들의 최저 임금안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은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 으며,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는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

◆ 정부, 국회 등 동향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

- 7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를 개최. 최저임금안으로 공익위원 조정안 은 4,580~4,620원, 노동계는 4,780원, 경영계 4,455원임을 확인함. 그러나 이날 오 후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3명이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 점거함.
-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 속개 이후 2012년 적용 최저임금 4,580원 ('11년 대비 6% 인상)을 의결함. 이날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3명이 출석하여 찬성 12표, 반대 4표, 기권 3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됨.

○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 7월 18일,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 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명 자료와 ‘사내하도 급 가이드라인 자율 준수 체크리스트’를 작성·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고용안정]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협력하도록 함
[근로조건 개선]	수급사업주의 기여를 고려하여 원사업주의 성과를 도급대금 등에 반영토록 노력하 고, 도급계약 체결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수급사업주 상호 노력
[노사협력]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사내하도 급 근로자 대표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복리후생]	원사업주의 복리후생시설을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사 내하도급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프로그램·교육장소 등 지원

-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불법 사내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가인드라인상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위법하게 사내하도급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할 예정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상습 체불사업주 구속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7월 17일,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 체불한 사업주 서 모 씨(43세)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함. 구속된 사업주는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원청업체인 모 조선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기성금) 3억 6백만 원을 수령한 후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240명, 450백만 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청산은커녕 사적인 용도로 전액 사용함(사채변제 2억 4천만 원, 유흥비 등 6천만 원).
- 통영지청은 “최근 조선업종 불황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의자가 체불임금 청산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자 개선의 정이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음.
- 2011년 들어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를 5명째 구속하였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힘.

○ 고용부, 올 상반기 노사관계 현황 발표

-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 상반기 노사관계 현황을 발표함. 올 상반기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노조법 재개정을 둘러싼 중앙단위 노·사·정 갈등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함.
- 또한 노사분규는 올 6월말 현재 22건이 발생, 2009년 상반기(41건)와 2010년 상반기(29건)에 비해 감소되었다는 분석. 다만 근로손실일수는 183천 일로 전년 동기(179천 일) 대비 소폭(2.2%) 증가. 이는 장기분규사업장의 영향으로 분석함(한진중공업, KEC 등).
-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시행 후 최고 수준의 도입률(92.3%) 등 순조롭게 정착 중임. 임금교섭타결률도 2011년 6월말 현재 37.3%로 전년 동기(16.6%) 대비 20.7%p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⁹⁾
-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7월 8일까지 총 167건의 설립신고 7월 1일 시행일에는 많았으나 이후 크게 둔화되고 있음. 설립 준비를 해온 노조의 설립신고가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함. 신규노조의 대부분은 기존 양 노총에서 분화한 것으로 분석됨(137개). 현재 상급단체 선택 노조는 17개에 불과, 대부분 미가맹으로 신고(150개)

9) 100인 이상 사업장 8,458개소 중 3,151개소가 임금교섭 타결.

-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 117개로 가장 많으며, 1천 인 이상 사업장도 21개로 나타나고 있음. 대기업은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중소기업은 한국노총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분화가 많음(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17개, 한국노총 사업장에서 8개).
- 업종별로는 버스·택시 사업장이 94개소(56.3%)로 가장 많으며, 그 외 제조·금융업종 등은 73개소(43.7%)로 나타남.
- 현재 교섭 중인 집중관리 사업장 220개 중 116개가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중임(52.7%). 대기업의 창구단일화 진행률이 높으며, 민주노총 사업장도 43.9%가 이행(한국노총 사업장은 64.4%)
- 이에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시행 이후 우려와 달리 소수노조의 난립이나 주요 대기업에서 강성노조 출현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노동계의 노조법 시행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금년도 임단협도 원만히 진행되는 등 노사관계의 안정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¹⁰⁾ **KLI**

(김가람, 노동정책분석실 연구원)

10) 이 자료의 원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서 제공하고 있음.